

# “긴급복지지원제도”

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드립니다.

그의 마음을  
돌리십시오

##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?

- ▶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,
  - 주소득자(또는 부소득자)의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 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
- ▶ 소득·재산 기준 (2019년) 이하인 사람

소득	346만원 (월,4인기준)
재산	대 도시 18,800만원
	중소도시 11,800만원
	농 어 촌 10,100만원
금융재산	500만원(단,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)

##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?

### ▶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(2019년)

생계지원	119만원 (월,4인기준)
의료지원	300만원 이내
주거지원	대 도시 64만원 (월,4인기준) 이내
	중소도시 42만원 (월,4인기준) 이내
	농 어 촌 24만원 (월,4인기준) 이내
그밖의지원	교육비, 연료비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

### ▶ 그 외 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

☎ 365일 24시간 긴급복지 지원 상담·신청해 드립니다.
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시·군·구 / 읍·면·동 신청